

제424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23일(수)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9)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1)
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6)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4)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6)
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8)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7)
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5)
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5)
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4)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6)
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8)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9)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2)
1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4)
16.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1)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8)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4)
1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8)
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9)

2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0)
2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3)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3)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6)
2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2)
2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7)
27.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4)
2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6)
2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7)
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8)
3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1)
3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3)
3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8)
3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3)
3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4)
36.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6)
3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1)
3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5)
3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8)
4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4)
4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8)
4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3)
4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0)
4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2)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0)
4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1)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3)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2)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5)

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6)
5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9)
5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6)
5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4)
5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9)
5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5)
5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7)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0)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6)
5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6)
6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3)
6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5)
6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6)
63.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5)
6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6)
6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1)
6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3)
67.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7)
68.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9)
6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8)
7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3)
7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7)
72.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8)
73.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0)
74.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3)
7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8)
7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7)
7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5)
7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3)
7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6)
8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6)
8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8822)

82. 양식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9)
83. 양식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9)
8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2)
8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2)
8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8)
8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0)
88. 저탄소 인증 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서왕진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92)
89. 행정입법 검토의 건
9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산림청 소관

상정된 안건

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9) 8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1) 8
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6) 8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4) 8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6) 8
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8) 8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7) 8
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5) 8
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5) 8
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4) 8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6) 8
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8) 8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9) 8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2) 8
1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4) 8
16.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1) 8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8)	8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4)	8
1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8)	8
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9)	8
2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0)	8
2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3)	8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3)	9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6)	9
2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2)	9
2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7)	9
27.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4)	9
2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6)	9
2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7)	9
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8)	9
3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1)	9
3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3)	9
3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8)	9
3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3)	9
3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4)	9
36.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6)	9
3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1)	9
3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5)	9
3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8)	9

4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4)	9
4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8)	9
4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3)	9
4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0)	9
4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2)	9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0)	9
4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1)	9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3)	9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2)	9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5)	9
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6)	9
5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9)	9
5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6)	9
5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4)	10
5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9)	10
5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5)	10
5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7)	10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0)	10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6)	10
5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6)	10
6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3)	10
6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5)	10
6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6)	10
63.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5)	10
6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6)	10
6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1)	10
6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3)	10
67.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7)	10
68.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9)	10

6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8)	10
7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3)	10
7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7)	10
72.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8)	10
73.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0)	10
74.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3)	10
7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8)	10
7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7)	10
7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5)	10
7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3)	10
7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6)	10
8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6)	10
8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8822)	10
8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9)	10
8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9)	10
8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2)	10
8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2)	11
8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8)	11
8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0)	11
88. 저탄소 인증 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서왕진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92)	11
89. 행정입법 검토의 건	11
9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11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어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새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청원 심사와 행정입법 검토 및 농

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법률안, 행정입법 검토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법률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9)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1)
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6)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4)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6)
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8)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7)
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5)
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5)
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4)
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6)
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8)
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9)
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2)
1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4)
16.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1)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8)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4)
1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8)
20. **농어업경업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9)
2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0)
2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3)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3)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6)
25.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2)
2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7)
27.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4)
2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6)
2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7)
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8)
3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1)
3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3)
3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8)
34.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3)
3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4)
36.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6)
3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1)
3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5)
3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8)
4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4)
4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8)
4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3)
4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0)
4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2)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0)
4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1)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3)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2)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5)
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6)
5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9)
5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6)

5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4)
5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9)
5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5)
5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7)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0)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6)
5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6)
6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3)
6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5)
6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6)
63.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5)
6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6)
6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1)
6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3)
67.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7)
68.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9)
6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8)
7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3)
7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7)
72.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8)
73.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0)
74.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3)
7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8)
7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7)
7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5)
7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3)
79.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6)
8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6)
8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8822)
8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9)
8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9)
8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012)

8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2)
8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8)
8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0)
88. 저탄소 인증 식품의 단체급식 확대와 인증 마크 활성화에 관한 청원(서왕진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92)
89. 행정입법 검토의 건
9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산림청 소관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7항까지 87건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88항 1건의 청원, 의사일정 제89항 행정입법 검토의 건 및 의사일정 제9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0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률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2항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7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90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과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률안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밀원식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 이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도 규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시급한 현안과 직접 관련되는 필수 소요를 중심으로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대응, 민생 지원을 위해 12조 2000억 원의 세출을 확대하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2개 사업에서 1150억 원 세출을 확대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인 외식업자의 매출을 신장하고 배달수수료 등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

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활용한 할인 지원 예산 6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수급 불안에 대응한 물가 안정,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등 할인 지원 예산 50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사업을 활용하여 농업정책자금,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과수 묘목 공급 등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이번 추경으로 보강된 재해대책비가 농업인에게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 복구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전용 등을 통해서 활용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신보 보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농업인과 농업·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필요하거나 부족한 예산은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1항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85항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90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하여 우수 해양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소금제조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안전, 민생 지원을 위해 총 262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어선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모든 어선원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62억 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2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금번에 편성된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금년도 예산 또한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추경안이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섭 산림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0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지원과 대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청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안으로 제출된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역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극한기후에 따른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총 4200억 원의 규모입니다.

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산불 피해지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목 제거 및 산사태 예방사업 등에 산림재해대책비 17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AI 감시카메라와 고성능 드론, 산불진화헬기와 다목적 산불진화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 감시·진화의 핵심자원을 확충하고 진화인력의 개인장비 품질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4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진화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산불진화임도, 간선임도 설치사업에 10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은 이번 대형산불을 반면교사로 삼아 극한기후로 예측과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켜내도록 더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산림청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국회법 제58조 1항에 따른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7항까지 37건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89항 행정입법 검토 및 의사일정 제90항 2025년 제1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문금주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을 통해 탄력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중앙회의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경제적·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약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입니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진흥지역상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행위의 범위가 넓어져서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행정입법입니다.

하단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의 경우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입니다.

첫 번째로 외식업경쟁력 강화패키지 사업은 65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장결제 금액 환급 등 사업 추진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및 소상공인 지원 외에 무기질비료 지원 등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 예산에 대한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선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86항까지의 28건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89항 행정입법 검토 및 의사일정 제9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최선영입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교 의원과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은 조합원의 최소 인원을 15인 미만에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일부 업종별 수협이 조합원 수 부족으로 해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안은 공해에서의 자원 남용을 막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BBNJ 협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발생한 이익을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은 해당 내용이 협약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대재해에 대한 보고의무는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산안법상의 보고의무와 처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수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해수부 소관 행정입법입니다.

염업조합법 제51조제3항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취지와 달리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수부장관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게 되므로 시행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수부 소관 추경안입니다.

자료 18페이지입니다.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6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 10만 개의 구명조끼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 보급물량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생산 지연, 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품질 및 수급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재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58항, 의사일정 제87항, 22 건의 법률안, 의사일정 제88항 1건의 청원, 의사일정 제89항 행정입법 검토 및 의사일정 제9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금 먼저 농림부 동물·방역 분야, 산림청, 해경청 법률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은 수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양질의 수의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불의의 피해를 입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규정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은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 전염병으로 하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완화된 방역 조치로도 질병 통제가 가능하다는 농림부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 신체검사를 의무화하려는 것 등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신체검사 항목 등 중요 사항은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청원입니다.

저탄소 인증 식품의 단체급식 확대 관련 청원은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취지이나 인증받은 식품의 생산·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단체급식 운영에 부담이 우려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입법 검토입니다.

검토 대상이 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조항은 처벌 규정의 형성 권한을 사실상 시·도지사 등에게 재위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쪽입니다.

산림청 소관 추경안은 대형산불에 대응하고 산불 피해지를 신속하게 복구하려는 것으로, 17쪽입니다. 국가재정법상의 추경안 편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89항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98조의2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입법을 제·개정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임위원회는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 받은 내용의 처리 계획과 결과를 자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행정입법과 관련하여 정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9항 행정입법 검토의 건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등 4건에 대해서 정부 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처리 계획과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법률안 및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병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예,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좀……

○위원장 어기구 예, 요구하십시오.

○주철현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예.

○주철현 위원 저희들이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와 관련돼서 농어촌공사 사장하고 마사회장 임명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농어촌공사 사장 임명 관련 자료는 도착을 했는데 마사회장 임명 관련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바로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오늘 농식품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좀 질의를 할 일이 있는데 당연히 나와 있겠지요? 출석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주철현 위원 여기 대상이 돼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시작에 앞서서 오늘 농촌진흥청장과 해양경찰청장님은 법안이 각각 1건씩 있어서 오늘 출석을 하셨는데 혹시 이 두 기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하시고, 없으면 이석하도록 양해해 주는 게 어떨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촌진흥청장님과 해양경찰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효율적인 추경 심사 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추경 심사 관련 서면질의 자료는 오늘 전체회의 중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시 질의한 사항과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은 4월 24일 예정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될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임호선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예, 장관님 말씀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좀 전에, 운영지원과장이 참석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주철현 위원 아니, 여기 참석 대상자로 명단까지 내놓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보고……

○주철현 위원 빨리 나오라고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그것이 좋을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세종이라 지금 출발을 하면, 세종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예, 출발하면 뭐 오후에 질문해도 되니까 하여튼 늦게라도 꼭 좀 출석해 달라고 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꼭 좀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 순서가 지금 막 바뀌어 가지고요. 지금 질의 순서에 따라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예, 30분부터 제가 북극항로 펀드에 대한 토론회가 있어서요.

임호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12조 원 추경에 농업은 없었다’ ‘농업 지원 빠진 12조 원 추경안, 국회 증액 절실’, 어제 자 농업계 신문의 1면톱 제목들입니다. 이번 추경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분노, 착잡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관께서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저는 장관님이 사고를 좀 바꿔야 된다 싶습니다. 다소가 아니라 매우 절망적이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산불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농촌인데 의무적인 행안부의 재해복구비 이외에 농민 몫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큰 문제다, 이 정부가 끝까지 농업·농촌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송미령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경안이 의결되는 동안 꿀 먹은 병어리처럼 앉아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지적을 아니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월 3일처럼 눈치만 보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짤막하게 대답 좀 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저희 여러 가지로 저희 의견을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무조건 반성한다고 해야지요. 무조건 반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많이 제출을 했고요.

○문대림 위원 그리고요. 시간 관계상요.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 때 윤석열 정부 농정 평가를 장관께 물었던 적이 있는데 10점

만점에 그때 9점을 주셨지요? 그랬던 기억 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기억납니다.

○**문대림 위원** 이제 어쨌든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이후에 장관님의 마지막 과업이 추경이라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농정 평가, 1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거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문대림 위원** 제가 그러면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12조 2000억 원 중에 0원이라는 추경 결과야말로 송미령 장관의 농정 평가이다. 그래서 송미령 장관의 농정 성적표는 12조 2000억 원 만점에 빵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 말씀은 좀 과하시고요.

○**문대림 위원** 지난 3년간 제가 보기엔 송미령 장관은 농업정책에 있어 가지고 자기 고집 일변도의 정책만 펴 왔고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농업 폐성, 농민 푸대접, 농촌 무시로 이어졌다 이런 지적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추경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저는 장관이 마지막 사명이 이 추경안인 줄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뭘 망설였는지, 이렇게…… 정책은 예산으로 말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성적표는 참 처참할 따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여기 국회에서 어쨌든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 끝까지 노력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 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일단요 반성을 좀 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텐데 어쨌든 농업경영비와 농가부채 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 특히 비료값 폭등과 관련해서 온 나라가 전체적으로 농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무기질 가격보조, 수급안정 예산 372억 원 증액 반영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추경이 12조 2000억 설정이 됐는데 분야와 신속성 이런 것들 때문에요……

○**문대림 위원** 시간 관계상요.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시설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안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예산 119억 원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시설농가, 축산농가, 양식어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용 전기요금 한시지원사업 예산 829억 원 신규 반영 적극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직을 걸겠다고 한번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지원 예산 94억 원 신규 반영 요청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산업부하고 한전 등 같이해 가지고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결과로써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병진 위원** 동북아의 물류 중심 항만으로 발돋움하는 평택항과 병진할 이병진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서해 상황 심상치 않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보고받은 것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병진 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외교부 얘기하지 마시고 일국의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 지역은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지역이고요. 이것에 맞게끔 관계부처하고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중국 측에 철거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외교부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외교 채널도 중요하지만 해양 주권 차원에서 그리고 해수부의 위치를 한 단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목소리를 이제는 크게 내야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방송에서 목소리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방송뿐이 아니고 각 부처에도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시부터 한중 협력대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런데 사무관님 보내셨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3개 과하고 1개 팀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자꾸 참여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 사이에 이것 관련 보고받은 것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병진 위원** 저는 말이지요 비례 대응의 자세까지 갖고 가야 되겠다. 중국의 양태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중국에서 공부도 했고 스무 살부터 관심을 갖고 중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분이 아니고 중국의 양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거의 추단할 정도입니다. 여기다 인공섬을 만들 수도 있고 해양 기점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잠정수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PMZ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병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13년 시진핑 주석의 해양 굴기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여기에 우리는 맞대응을 지금 못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문제는 국익과 안보 측면에서도 말이지요 단호히 우리 의견을 제기하고 끝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제2의 동북공정이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PPT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서희의 강동 6주 알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거란의 소순녕과 담판을 통해서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도 말이지요 고구려 시대 우리 영토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내가 요구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우리한테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하고 가까이 지낼 테니, 남송하고 이제는 좀 멀리하고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유연하게 해 가지고 우리 땅을 다시 회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그런 자세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 여기 제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베트남과 필리핀 사례가 대표적인 EEZ 분쟁에서 온, 국제사법재판소가 문제점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물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중국 출장을 갔다 와서 중국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미국 관세전쟁에 대비해서 한국과 일본과 협력해서 미국과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들을 느꼈단 말이지요. 한국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가까이하려고 한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차제에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이지요 여기다 구조물까지 설치한다는 자세로 기재부하고 예산 논의할 용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고요. 비례 대응 포함해서 지혜로운 대책들 마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저는 말이지요 그렇게 대비를 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코 이들이 양보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처음에는 양어장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30만 내지 40만 마리. 그런데 지금 거기다 구조물 가로 100, 세로 80m, 71m짜리예요. 시추선이란 말이지요. 이게 양어장입니까? 소도 웃을 일 아니겠어요. 반경 500m를 안전지대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안전지대를 두세 개로 만들어 가지고 그 너비를 다 자기들의 안전지대로 삼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비례적으로 이걸 만들어 갈 때만이 그들이 한국과 이렇게 모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자책감을 갖고 철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놔둘 경우에는 저 난사군도의 인공섬 같은, 영해의 기점으로 삼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을 수 없습니다.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말씀해 주신 내용들 잘 인지하고 있고요.

우선은 오늘 회의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받고 나서 지금까지 관계부처와 함께했던 대책들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재정 당국하고도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대책들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비례 대응까지 준비해서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 갈 수 있도록 꼭 이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입니다.

지난 상임위 때 이어서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에 대해서 해수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란 1호·2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선란 1호가 2020년도에 발견되고 4년 후에 2024년에 선란 2호가 또 추가로 발견됐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각각의 높이가 한 가로세로 70에서, 70 곱하기 7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30층 건물 정도 됩니다.

○**조경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게 선란 1호……

PPT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선란 1호·2호 말고도 지금 석유시추 구조물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또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건 2022년이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나는 해수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이런 걸 국회에다 보고를 안 합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업무보고서에 넣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왜 이걸 숨깁니까? 이게 보니까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다 허당들이에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 안보를 지키고 영토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말로는 보수, 말로는 진보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터부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 정권들이. 인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신경이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석유시추 구조물이라고 하는 테가 보면 고정구조물로 돼 있지요?

PPT 보시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것. 국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보면 지금 헬기를 띄울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헬기를. 이해됩니까?

이걸 만든, 고정구조물을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중국 측에서는 연어 양식을 위한 보조시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측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관계부처가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경태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요—잘 들으셔야 됩니다—이삼 년 내내 무려 12개까지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고받았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12개까지 확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역에 대한 어떤 고착화를 뜻할 수도 있고요.

○**조경태 위원** 지금 상주를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여기 규모는 조선일보에서 100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7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거기는요 선란 1·2호에 상주하는 거고요.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보조시설에 그렇게……

○**조경태 위원** 지금 이네들이 헬기장은 당연히 있고요, 레이더 시설도 만들고. 그렇지요? 상주 인원을 대폭 늘려서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지난번에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왕이 외무부장관한테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데 왕이 중국 장관이 뭐라고 답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존중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말만 했어요. 해체하겠다는 말 안 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해체할 의지도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오늘 회의 결과를 한 번 더 보고 강력히 대응하는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중국 대사는 한일 어업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중국은 한중 어업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겁니다. 맞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검토……

○조경태 위원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자료가 더 확보된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제소하세요. 제소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시고.

그리고 지난 4월 10일 날 제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 예산 편성하겠습니까?’ 하니까 장관님께서 ‘바로 예산에 대한 조치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왜 안 돼 있습니까? 이것보다 시급한 예산이 있습니까, 해수부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중국의 선란 1·2호의 비례 대응의 차원에서…… 한 600억 정도 들어간대요, 하나를 만드는 데. 그러면 최소한 600억 이상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길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검토 방법에 대한 것들을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일단 여기 대응에 대해서, 비례 대응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세요, 이번 추경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도와주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경태 위원 이병진 위원님, 도와주시겠지요? 여야 위원님, 다 도와주시겠지요?

(「그럼요」 하는 위원 있음)

다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담아내는 겁니다. 담아내서 우리가 비례 대응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로써가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써 보여 줄 때 중국이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처에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추경에 꼭 예산 집어넣어서 뭔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전종덕 위원 임상섭 청장님을 포함해서 역대 청장님들이 산불 확산을 막지 못한 이유로 임도 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전종덕 위원 PT 한번 봐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번에 산불 피해가 났던 경북지역의 임도입니다. 이렇게 임도가 많은데 왜 산불 확산을 못 막았을까요?

다음 PT 보십시오.

다음 PT 보시면 보라색 부분이 산불의 심각도가 가장 심한 곳이고 그리고 까만 부분이 임도예요. 그런데 보라색, 심각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대부분 임도 가까이 있는 지역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 그동안 계속 강조해 오셨던 것처럼, 또 이번 산불의 경우는 임도가 바람길을 만들어서 피해를 더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도가 부족해서 산림 확산을 못 막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산불 관련해서는 진압하는 과정에서 장비도 부족했고 인력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침엽수 위주로 식재되어 있는 이런 산림 식재 현황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지휘체계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평계를 대고 임도가 부족해서 산불 확산 진화를 못 했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PT를 보여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임도와 관련돼서는 위원장님, 위원님,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전종덕 위원 아니 이따, 어쨌든 다른 질문 해야 되니까요.

○산림청장 임상섭 임도와 관련된 것은.....

○전종덕 위원 그래서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확한 원인 분석하에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현안질의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장비도 불을 끄지만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진압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진화대원들이 실제로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진화대원에게 지급된 장비나 진화복도 상당히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부족했고 그래서 오히려 인명피해를 더 키웠다 이런 지적들을 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림청 추경 편성된 것을 보면 시설이나 장비는 투자가 됐는데 인력에 대한 투자는, 인력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은 너무 미미합니다.

특히 산불진화대원들에게 위험수당을 새로 신설했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전종덕 위원 그런데 그게 4만 원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산불 예방업무나 산불 진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위험수당은 8만 원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산

불진화대원들은 4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까? 이것은 차별 아닙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공무원 위험수당은 위험수당이 아니고요, 8만 원 말씀하신 것은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약간 다른 항목입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한 것이고…… 성격이 같지 왜 다릅니까?

그리고 2022년 7월에 고용지청에서 산불 진화 업무를 필수업무로 지정했잖아요. 그리고 산림청 예규 716호에 의해서 청장님의 공무원이 아니어도 상시적으로 산불을 예방하거나 진화하는 업무를 하면 별도로 지정해서 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지정한 적이 없으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건……

○**전종덕 위원** 그러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8만 원을 받고 있는 위험수당을 산불진화대원은 4만 원만 편성한 것 자체가 저는 청장님의 대단히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고 차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위험수당 4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는 편성돼 있고요, 공무원 8만 원에 대한 것은 약간 성격이 다른 특수업무 관련된 수당이라서 그것은 재정 당국하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아니지요. 산불 진압 업무하고 공무원들의 특수수당 내용이 같아요. 왜 자꾸 다르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8만 원을 똑같이 편성해야지 왜 안 그래도 처우가 열악하신 산불진화대원들한테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거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보고요.

출장비 경우도 그렇습니다. 출장비도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잖아요. 아예 여비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출장비도 어쨌든 예방 활동을 하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압 활동을 하든 나가니까 이분들에 대한 출장비도 반영해서, 안 그래도 열악하고 위험한 산불 진압과 예방 활동을 하는 진압대원들에게 저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말씀하신 특수진화대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수당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해 왔습니다. 과거에 기간제로 돼 있던 것들은 처우개선 차원에서 공무직으로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연봉도 지금 3590만 원이라서 다른 데 재난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차별을 많이 두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수진화대가 산불에 대해서 공중진화대와 함께 직접 붙어서 화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처우개선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림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재정 당국이나 인사혁신

처하고 또 협의로 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더 충분히.....

○전종덕 위원 산림청에서 차별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려야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종덕 위원 그렇게 올리시겠어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시겠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그리고 산림청장님, 임도 관련해서 지금 찬반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산림청장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추가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시각적으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저 앞에 나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여기 이게.....

○위원장 어기구 마이크로 해야지. 마이크가 있어야 되니까..... 뒤에 연단에 가서 하시면 어때요?

○산림청장 임상섭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임도가 이 사이에 나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탄 자국이 있어서.....

○위원장 어기구 그림이 안 보입니다.

○전종덕 위원 안 보여요. 모니터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어기구 하십시오.

○산림청장 임상섭 이 화면이 임도 따라서 바람길이 됐다라는 그런 자료 사진으로 언론에 계속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밀양 산불이 났던 그 사진이거든요. 어디 지역이냐면 이게 2022년 6월 달에 난 산불 피해지역인데 여기에 임도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임도가 이렇게 나 있는데, 이 부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는 지역입니다.

보시면 임도가 없는 이 지역은 거의 심·중·경으로 나눴을 때 심각하게 다 향어요. 사진이 여기 보이는 이 사진입니다. 임도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위에 있는 것은 임도가 있어서 야간에 화선이 약할 때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진화를 해서 이 정도로 막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사진만 가지고 임도가 바람길이 됐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24년도 대형산불 기간 한 달 동안 임도 내외에 풍향·풍측기를 다 설치해서 한 달 동안 측정한 결과입니다. 파란색들이 보이는 게 임도 방향이고요, 빨간색들이 바람의 주풍 방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데이터를 분석해도 임도가 바람길이 돼 가지고 더 확산이 됐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바람길을 측정한 게 몇 월 달이에요?

○산림청장 임상섭 대형산불 기간인 4월부터 5월.....

○임미애 위원 4월부터 5월까지 측정하신 거예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리고 강원 고성 지역하고 경북 울진 지역, 대형산불 위험이

제일 큰 지역들을 저희들이 일부러 골라서 했습니다. 임도 내 지역하고 임도 외 숲 지역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한 달 동안 풍향기로 계측을 해 가지고 다 나온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경험적으로도 이번 경북 산청, 하동, 의성, 울주 지자체장님들이나 진화대원들하고 인터뷰해 보시면 금방 압니다. 임도가 있을 때 진화 속도가 더 빠른지 아니면 더 어려운지 그것은 경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다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인데 지적을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와서 설명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임도 관련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언론인들 등등 해서 잘 설명해서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임미애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제안설명하는 중에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존 사업을 활용해서 농업정책자금 그리고 주택 개량, 농기계 임대, 시설 개보수, 과수 묘목 공급 이런 것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전용을 해서라도 산불복구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으면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미애 위원 아직 논의 중인 것은 아니지요? 준비하신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부는 논의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확정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 해서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미애 위원 장관님, 제가 이 예산안을 받고서 피해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굉장히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의 목적이 세 가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재난 복구와 대응 그다음에 통상 압력에 대한 대응, AI 그다음에 민생. 그런데 이 예산안 어디에 재난이 들어 있는지 저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민들, 어민들, 임업인들의 생산 기반이 다 파괴됐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여러 차례 드렸고, 생산 기반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지금은 이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겠는가, 공동체가 이렇게 파괴됐는데 이 지역이 이곳에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 또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와는 전혀 무관하게 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삽 한 자루도 없고 호미 한 자루도 없으니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통해서 임대사업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 달라’라고 긴급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요청한 예산이 6조도 아닙니다. 6000억도 아닙니다. 600억도 아닙니다. 63억 원 요청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좀…… ‘사업 시설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테니 품종도 늘리고 대수도 늘려서 서로 갈등 없이 농기

계를 빌려서라도 당장 급하게 해야 할 농사일들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예산조차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접한 예산은 이게 농림부에서 제출한 예산이 맞나? 이거 혹시 다른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을 농림부가 이름만 대주는 들려리 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예산의 편성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농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추경예산안은 그 3대 분야이고 그야말로 필수 소요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내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를 한 것이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해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구비 현실화 그리고 보조율 상향 그리고 생계비 이런 것들에 반영되는 예산이 관계부처 예산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예산에 9460억 원이 담겨 있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부분에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9300억의 예산이 그러면 피해지역이 요구하는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부는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농기계·농자재 같은 것이나 그 밖에 종묘 그리고 과수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은 저희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기존 사업 예산들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번에 올라온 추경 보면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으로 650억 그다음에 할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할인 지원……

○**임미애 위원** 하반기에 소비자 농축산물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 지원 해서 500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예산이 결국은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2만 원 이상, 3회 이상 구매를 했을 때 여기에 따르는 지원을 1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이 농림부에서 올리는 예산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니까 외식업이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농림식품부가 해야 할 예산이 아니라 소상공인 관련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 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할인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이것을 다 썼어요. 상반기에 다

쓰면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추가로 편성한 거 같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다 쓴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임미애 위원** 여기 볼까요? 실제로 1060억 원, 홍보비 20억 원 합쳐서 1080억 원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1060억 원을 올 상반기에 80%가량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80.2%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나니 정작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추석이나 구정이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서 이 예산이 과연 충분하겠는가라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할인 사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되는 것도 문제가 많다는 것 그동안 우리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추경으로 또 편성을 꼭 했어야 하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 부분은 집행 방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형 마트 위주에서 중소마트 혹은 전통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인 지원도 마찬가지로 공공배달앱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외식이든..... 소비의 위축이라는 것은 우리 농산물 소비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확장을 하면 이게 우리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 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농림식품부가 농림식품부로 하지 말고 그냥 물가관리부처 이렇게 이름 바꾸세요. 그게 맞습니다. 물가관리청 이런 식으로 이름 바꾸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물가하고는 좀.....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저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이분들이 농민이 과연 머리에 들어 있나, 어민이 머리에 들어 있나, 임업인이 머리에 들어 있나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위원님,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면.....

○**위원장 어기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실 우리 농가에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물가관리청으로 바꾸시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우리 농가에게도 갑니다, 그 피해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임미애 위원** 생산 기반이 완전히 붕괴됐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생산.....

○**임미애 위원**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소비자들의 물가가 오른다고 그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지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다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존 예산을 사용하고 별도로 다른 부처 예산에 재해대책비

를 담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임미애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임미애 위원님 지적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국민 모두가, 농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장 어기구 그걸 자꾸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지금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어기구 농민들, 농촌에서 요구하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그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무슨,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노력한 것 전혀 이만큼도 보이질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 과정을 다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과정이 무슨 과정입니까.

김선교 위원님, 혼내 주십시오.

○김선교 위원 김선교 위원입니다.

저도 이 예산안 올라온 것 보니까 1150억이에요, 12조 중에. 그래서 민생 예산의 어느 차원에서.....

장관님, 현장에 다녀 보면 농업인들, 이런 축산인들 해서 많이 건의받지 않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많이 받습니다.

○김선교 위원 제일, 이번 추경에는 꼭 담았어야 된다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무기질비료 지원이라든가.....

○김선교 위원 그렇지요, 무기질비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사용 전기료, 하여튼 우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김선교 위원 그런데 그걸 여기에 한 꼭지도 담지를 않았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김선교 위원 그것 재정 당국에 뭐 했는데 재정 당국에서 잘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필수 소요 중심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해명을 해야 돼요? 지금 비료고 전기고 그런 부분에 하나도 예산이 반영 안 됐어요. 어떻게 해명할 대안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국회 과정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저희 같이 노

력을 하면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소망을 합니다.

○**김선교 위원** 증액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렇지요? 돈이 없어서 12조밖에 못 세웠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안설명한 것에 보면 누가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이고. 그렇지요? 물가를 잡기 위한 안정적인 장바구니 예산이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 비료·전기료 어떻게 담을 대안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금 이 나머지 기간에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그간 부단히 애를 썼는데 반영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국회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최고로, 현장에 다녀 보면 지금 장관님이 제대로 알고 계신데 무기질비료 문제 또 전기 문제 또 축산 같은 데는 낙농 이것이 겨울에는 양이 많이 나오고 여름에는 좀 적게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랬다고 우유를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가지고 또 소위 열릴 적에 그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차관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김선교 위원** 그리고 산림청장님, 봄 산불은 이제 지나갔고…… 지나갔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아닙니다. 5월 15일까지입니다.

○**김선교 위원** 5월 15일인데 그렇게 또 크게……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까 그런 대안책은 이제 있을 거고, 가을 산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가을 산불은 봄철 산불에 비해서 화세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게 좀 적습니다. 적어서 저희들이 차츰차츰……

○**김선교 위원** 그런데 왜 추가경정예산에 헬기에 관한 예산은 없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추경에 지금 대형 3대하고 중형 3대 추가로 계약하는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지금 임대용 헬기가 많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으로도 지금 개정이 됐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세워 줘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걸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재정 당국하고 해야지. 꾀 터지게 싸워서라도 세워야지.

○**산림청장 임상섭** 그런데 지자체에서 임차하는 산불진화헬기는 지방사무로 분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원을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하면 된다 이게 재정 당국의 입장인 것 같고요. 저희들 그래도 산불 진화와 관련된 것은 전국 단위로 산림청에서 컨트롤해야 된다……

○**김선교 위원** 이번에 우리가 그러면 소위에서 또 담을 테니까 그것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장관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농업·농민을 위한 예산이 안 담겼다 하는 지적 말씀이 계시고 저도 사실 저희 방에 설명 왔을 때, 제가 좀처럼 짜증을 잘 안 내거든요, 성격상. 그런데 무척 짜증스럽더라고요. 농업·농민 예산 잔뜩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군 단위라 더 심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무기질비료 구입 예산 국회에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 다 받아 보셨겠지만 농협에서 372억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보조금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최소한 372억은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호선 위원 그렇지요? 해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그러면 어떤 태도이셔야 됐나 하면 각 위원님들 이렇게 설명하실 때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해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도와주십시오’ 해서…… 이게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리고 아마 어느 직종보다도 농업·농민분들께서 느끼시는 허탈감 이건 말도 못 하는 거지요.

이번 산불 가장 피해자가 누구예요? 사실상 우리 농민분들이시지 않습니까, 농사 다 망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추경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비료값이나 전기료 이런 것은 담기겠지라고 하는 기대는 당연히 갖는데 이게 한 푼도 반영돼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낯으로 정부 각료로서 얼굴을 드시겠어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반드시 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저희도 재정 당국하고 좀 더 협의할 테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하여튼 내일부터 바짝 매달려 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 해 주시고요.

저희가 낙농조합에도 요구받아 보니까 불과 몇십억, 낙농 추경 편성 예산 낙농육우협회 고작 45억 원 넣어 달라는 게…… 이 정도면 사실은 낙농업 하시는 분들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잖아요. 내용은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강조말씀 드리겠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산림청장님, 너무 노고가 많으신데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산불진화 지자체 임차 헬기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호선 위원** 78대 있더라고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이게 기령이 61년 된 게 있고요 53년 된 게 있고 50년 된 게 있고 48년 된 게 있고 지금 이게 어마어마해요. 물론 저는 알아요, 이게 왜 이런지. 계속 교차하는 거잖아요, 이게 차 내구연한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있으면 이런 헬기 가지고 운용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호선 위원** 사고 현황 알고 계세요? 지난 5년 동안 제가 사고 현황을 받아 보니까 이게 지난 5년간…… 10년간이군요. 10년간 보니까 25건 추락사고가 났는데 사망이 열여덟 분, 부상이 다섯 분이에요. 이게 전부 다 전문……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사고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왜 나겠어요? 가장 근본적인 건 노후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 문제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범 찾아봤어요. 여기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1년도 4월에, 헬기 구입 근거에 ‘지자체가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주체가 산림청장님이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아무리 현실적인 걸…… 예산 당국을 지금 대변하실 위치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강원도에서 국비 45억 원 요청했고 또 올해, 내년 예산에 담아 달라고 전남에서 78억 원, 충북에서 16억 원 요청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지원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으실 겁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21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이, 그런 이유를 저희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보조를 하면 전국 단위로 헬기를 운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강원 지역에 있는 헬기들을 필요시에 경북 지역으로 동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필요 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함께 노력하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호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저도 결국은 돈 얘기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보면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지원할 수도 있다’도 아니고.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것 강제조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9조 1항, 해당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걸로 규정돼 있습니다. 바뀌었나요? 맞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 179억인가가 있고, 총계가. 그리고 최근 24년도에 42억, 23년도에 51억, 22년도에 40억, 원천적으로 방역 관련된 예산이 태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 확보 방향을 바꾸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에서, 특히 영암군 같은 경우에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월 20억 이상 그 비용이 소요된다는데 영암군에서 15억, 전남도가 약 21억을 요청했는데 정부 방역지원액은 2억 3000만 원, 그중에 영암군에 1억 5000만 원이 갚대요. 법을 무시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지원이다. 이리해 가지고 어떻게 구제역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영암군 같은 경우에는 2억 3000만 원을 기지급했고요. 전남도에서 요청한 긴급방역비 같은 경우에는 12억 8700만 원을 5월 달에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가축 방역에 필요한 것은 사실 행안부에서 또 지원을 합니다.

○서삼석 위원 그것 필요할 때 줘야지 왜 5월 달에 주냐고, 하루가 시급한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5월 초에 바로 나갑니다.

○서삼석 위원 그런 것을 늘 빼고 있어야지. 하여튼 영암군이 1억 5000은 받았다 해요, 다른 건 받은 적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억 3000 보냈습니다, 영암군에. 기지급 액수가 2억 3000이고요.

○서삼석 위원 그러면 영암군이 2000…… 못 받았다는 데,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산불 피해 농업인 지원계획안을 보니까 좋은 말 많이 써놨구먼.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 계획한 대로 하여튼 차근차근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방역초소 설치·운영 등 비용이 월 20억이 들어간다는데 1억 5000 주고 말면 쓰겠어요, 엄연히 법에 근거가 있는데?

잘못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신속하게 내려보내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돈을 어디서 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돈을 어디서 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왜 안 줘요? 빨리 줘야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긴급방역비 있습니다. 5월 초에 바로 보냅니다.

○**서삼석 위원** 군수님이 나한테 부탁하던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배정 완료했습니다, 위원님.

○**서삼석 위원** 존경하는 송 장관님 믿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산림청장님, 500억 갖다가 헬기를 도입하는데 그게 중고 재제작한 헬기 입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대부분 요즘은 재제작한 헬기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것도 미국산이라면서요?

○**산림청장 임상섭** 미국산도 있고 과거에는 러시아산도 있고 그랬습니다.

○**서삼석 위원** 러시아산은 말도 꺼내면 안 되지, 부품 수급 문제를 이미 본 위원이 지적한 지가 오래인데.

산불은 대형화되어 가는데 이렇게 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뒷북만 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정 당국을 탓하기만 하기에는 너무 급박한 그런 협편인데 뭔 수를 내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여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제가 감히 제언을 하는데 농림부뿐만이 아니라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특히 산림청 관련된 그런 예산은 아무리 없더라도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제언을 감히 드리고.

또 미국산 헬기를 도입하는데 재제작 헬기도 그렇지만 50여 년 전에 출시된 그런 제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에 의문이 들고 요즘 핫한 뉴스로 늘 부각이 되고 있는 관세 문제 이런 것들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청장님, 이런 것도 충분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더디게 가더라도 근본적으로 대형산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비 이런 것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에서는 장비 도입을 위한 관련법을 만들어야 된다. 소방청에 소방장비관리법이 있고 해경청에 해양경찰장비법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벤치마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힘내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송옥주 위원** 요즘 농민이나 농촌의 현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어렵습니다.

○**송옥주 위원** 매우 어렵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옥주 위원** 그러계요.

지금 현재의 정부가 임기가 4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옥주 위원** 막바지에 장관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는 민생에 무엇보다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동의합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데 장관님 보니까 지금 알박기에 치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철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부분도 있기는 한데 한국마사회랑 농어촌공사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공모사업도 하고 사람들 추천한다고 절차 진행 중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절차는 오래전부터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송옥주 위원**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옥주 위원** 그런데 이미 다 내정됐나 봐요. 한국마사회는 김희선 국정원 2차장,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거의 유력하고 내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는 김인중 윤석열 정부의 초대 농림부차관이 지금 유력하다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장관님이 모르세요? 아실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농림부장관이 임명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런 데도 보니까 국민의힘 출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송옥주 위원**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송옥주 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립농업박물관장도 보니까 이미 공모가 마무리돼서 충암고 출신의 조재호 전 농촌진흥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송옥주 위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알박기를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농민과 농촌을 배반하는 거고요. 또 국민들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멈추시기 바라겠고 이런 인사와 관련돼서는 40일 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거기서 임명하는 게 그 정책과 노선과 비전에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는 그냥 규정과 절차에 맞추어서 하고요. 최대로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임명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옥주 위원**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임명과 장관 임명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이나 어디서 하라고 지시를 내리시거나 국무회의에서 그런 논의가 있으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 게 아니시라 그러면 그 절차를 서서히 하든지 유예하든지 보류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살펴보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수부는 알박기가 없으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송옥주 위원** 빨리 대답하셔야 되는데, 시계가 막 가고 있어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딱히 그런 건 없고 지금 전문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해수부도 마찬가지로 그 질문의 취지를 아실 테니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다음은 산림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청장님, 지금 추경예산에도 있지만 산불과 관련된 예방 중심으로 해서 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방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일어나고 나서 피해 규모라든지 피해액에 대한 산정이 치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이번에 경상북도, 경북과 관련된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액이 1㏊당 산림 피해액은 543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2022년 3월에 울진과 삼척에 대한 산불은 1㏊당 산림 피해액이 857만 원으로 조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액에 대한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피해 규모 자체도 사실은 처음에 발표한 것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불 피해 규모를 보니까 당초에 보도에 나온 것보다는 훨씬 더, 2.2배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10만㏊가 넘는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조사할 필요도 있겠고요. 또 추후에 이런 피해액이라든지 피해 규모가 나중에 피해 농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임업인들이라든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하고도 연관돼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 좀 주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처음에 산불 주불 진화가 완료되고 제가 발표할 때 4만 7000㏊ 산불영향구역이라고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산불 진화가 완료되면 영향구역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산불 피해 면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현장 조사를 거친 다음에 피해 면적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화 단계에서 얘기했고 이번에 영남권 산불 피해 영향구역하고 실제 산불 피해 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난 건 몇 번 설명드렸다시피 강풍에 의해서 수관화로 해서 짧은 시간에 피해 면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옥주 위원 그러면 피해액은 왜 그런 거예요?

○산림청장 임상섭 피해액도 울진-삼척 지역, 울진 산불 피해에 비해서 지금은 복구 비용 기준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과거에 벌채와 관련된 것들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벌채나 식재조림이나 생태 복원과 관련된 것들을 비용을 줄여서 이번에 산정을 해서 그렇게 단위면적당 피해 복구 면적이 조금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송옥주 위원 국민들이 이해를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서천호 위원입니다.

산림청장님,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보면 2차 피해 예방하고 복구 차원에서도 인력·장비 보강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된 게 없습니까, 피해 지원? 없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그건……

○서천호 위원 타 부처에서?

○산림청장 임상섭 예, 행안부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불진화헬기 도입하는 부분이 8대로 6대를 확충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종을 이렇게 시급하게 결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도입 계약을 하더라도 2~3년 걸리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3년 정도 걸립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수리온 같으면 야간 운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 국산 헬기 같으면. 그리고 고정익, 수송기를 도입하게 되면 산불 진화 능력이 월등하다라고 평가돼 있는데 이 부분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기종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시급하게 이렇게 결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어차피 지금 수리온하고…… 수리온이 중형헬기인데요. 중형헬기하고 대형헬기를 3대, 3대씩 해서 추경안에는 지금 6대를 시작하는 것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호 위원 그래서 그 취지는 알겠는데 질의하는 뜻은 뭐냐 하면 이왕이면 국산 장비를 사용하자. 왜냐하면 이게 수리·보수도 쉽잖아요. 이번 산불에서도 봤다시피 미국까지 수리를 의뢰하다 보니까 실제로 산불 진화에 투입을 못 하는 상황도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고정익 같은 부분은 이게 기체 변경이 지금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타 부처와도 협의를 해서 기종을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고 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임대 헬기, 그 실제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지자체 임차 헬기는 다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임차 비용은 애초에 지자체 별로 지불하는데 운영비마저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지역의 산불을, 실제로 산불에 동원되지 않은 지자체 임대 헬기 부분도 그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문제가 생겨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타 지역에 헬기 지원하는 부분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하자면 실제로 운영비만이라도 국비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헬기 지원하는 부분이 저도 현장에서 봤지만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자기 지역에 일어난 산불에 대해서는 헬기 투입에 적극적인데 타 지역에 되는 부분은 소극적이다. 그게 왜냐하면 운영비 지원…… 자기 지역이 아닌데도 헬기가 출동되면 운영비를 본인 그 지역구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국비로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불 진화 대응체계 이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산림이 중심이냐, 화재 진압이 중심이냐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산불 진화의 역량이라는 것은 진화헬기와 진압대원들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소방과 지자체에서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 진압의 전문성은 소방청입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산림이라고 해서 산림청이……

○산림청장 임상섭 아니, 산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천호 위원 산림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이 대응 능력을 다 그냥,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산림청에서 내놓으라는 측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되느냐?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응체계 또 지휘체계 부분을. 그 부분을 연구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도 개설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 한 일주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풍향 부분이 산악지대는 수시로도,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바뀝니다. 풍향과 풍속과 관련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임도 개설이라든지 진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정하게 되면 자칫 착오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주간에는 헬기로 진화를 하지만 야간 잔불 정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야간에 잔불 정리하기 위해서 진입할 수 있는 통로 확보가 다 임도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사안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실제로 진화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설정을 들으셔서 이런 부분이 또 실질적으로 진화 능력을 확대하는 데, 증가시키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임도 개설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산불 진화 대응체계에 대해서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는 산불과 관련된 것들은 산림 분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산림 지역에서 발생되는 산불 특성은 도시 지역이나 건물 화재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아는 데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고.

또 협업 시스템으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는 산림 분야에서 하고 그 아래의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소방 분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업이 돼 있고 또 진화헬기라든지 장병들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국방부, 주민 대피나 교통 체계 같은 건, 교통 관련된 정리는 경찰 이렇게 협업화가 돼 있는 시스템이지 이걸……

○서천호 위원 그 시스템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식품부장관께 마사회장하고 농어촌공사 사장 임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받아 보니까 두 기관의 기관장, 마사회장하고 농어촌공사 사장의 임명 절차가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렇게 돼서 현재로서는 양 기관에서 다 임추위 복수 추천을 공운위에 다 했던데 공운위에서 아직까지 넘어온 게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공운위에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는 공운위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공운위를. 그렇게 돼 있던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마사회는 공운위를 거치는데 농어촌공사는 거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건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공공기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공공기관이기는 합니다.

○주철현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들으셨겠지만 이 모든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 때 이루어진 일이라서 질문을 했더니 자기는 잘 모른다, 주무장관들이 다 해서 그냥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장관님이 임추위 열어서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비연임 통보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3년 전에 임명이 돼서 말하자면 시기가 도래했고요.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경영평가 결과가 C등급이

예요, 두 기관 다. 그래서 비연임 통보를 했습니다.

○**주철현 위원** 비연임 통보할 때 당연히 대통령실하고 상의했겠지요? 임명권자니까 당연히 상의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경영평가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실의 동의 없이 장관님이 ‘당신 안 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절차를 진행한다 그것은 이야기는 하지만 그걸 누구를 정해 놓고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비연임 통보를 하겠다라고 내락은 받을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대행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주철현 위원** 대행하고 의논한 게 아니고 마사회장은 작년 11월 22일 날 비연임 통보를 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거기는 더 오래됐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면 윤 대통령 시절인데 비연임 통보하게 되면 당연히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당시 보고드린 시점에서 후임자는 누구라고 지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주철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주철현 위원** 후임자와 관련돼서 그러면 누구에게 언질을 받은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언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임추위를 통해서……

○**주철현 위원** 그러면 누가 그런 통보를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어떤 통보를……

○**주철현 위원** 아니, 현재 지금 전혀……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하고 국정원 2차장 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서울 법대 출신의 윤 전 대통령 검사 선배가 지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주철현 위원** 그런 상태인데 이와 관련돼서 한 번도 뭐 언질을 받거나 통보를 받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없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면 그런 역할을 누가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전문성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분이 유력한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문성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임명되지 않을……

○**주철현 위원** 아니, 그분이 뭔 전문성이 있어요? 검사 하고 국회의원 하고, 국회 농해수위 위원 한 것도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주철현 위원** 국정원 2차장 하신 분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마사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문성이 없으면 임명될 수 없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일 유력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철현 위원**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모른다면서 어떻게 압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임추위를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누가 유력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철현 위원** 임추위에서 복수 추천된 분 중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들어가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주철현 위원** 아니, 대통령이, 나 같으면 100% 그렇게 임명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농식품부장관이 제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청한 바가 없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공운위에서 한 분 단수 추천돼 왔잖아요. 다 올 거 아닙니까, 공운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공운위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주철현 위원** 예, 그러면 그냥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제청을 하도록……

○**주철현 위원** 복수 추천받습니까, 한 분 단수 추천받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그것은 공운위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은 공운위에서는 이분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판단하는 것이지, 그래서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다 올리는 것이지……

○**주철현 위원** 복수로 같이 올린다 이 말입니까, 자격이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렇게 되면 장관님께서 선택해서 한 분만 추천하는 거네요, 임명해 달라고? 제청하는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대행께 제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만약에 김희선 전 국회의원이 추천돼 오더라도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피력하신 거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문성이 없는 분을 추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제청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믿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는 전문성이 있는 분만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주철현 위원** 그렇게 확답을 해 줘서 다행인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 공직자는 민주 국가에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아니면 선출직 공직자가 임명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나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이런 중요한 공직 임명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규정과 절차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철현 위원** 규정과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임기 말에 40일 남겨 놓고 이런 중요한 공직자 임명하면 안 돼요.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절차가 내가 보기에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명해 봤자 또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짜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임명제청권 행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 농업·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그런 분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철현 위원** 추천하지 말고. 임명권이 없다니까요, 권한대행이? 현재에서도 그렇게 판결했잖아요. 현상 유지적으로만, 제한적으로만 임명권이 있다,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꾸 현재 결정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오히려 권한대행에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권한대행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좋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입니다.

장관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공공배달앱 기반 소비쿠폰 지원 650억 추경예산 반영이 돼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문금주 위원** 이 사업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한번 비교를 해 봤을 때 무기질비료, 면세유 보조금 지원, 농사용 전기 사용요금 지원, 청년농 육성 지원 이런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우선이 있다고 봐요, 장관님 입장에서, 농림부 입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농업인들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이 우선입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업이 반영이 안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이제……

○**문금주 위원** 공공배달앱 기반 소비쿠폰 지원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농림부에서 이거를 세울 사업은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이제……

○**문금주 위원** 차라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소상공인 지원사업인데…… 그리고 나는 이 공공배달앱 기반 소비쿠폰 지원이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

원하는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는 건데 농림부는 다른 예산이, 농업·농촌 관련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이게 반영이 됐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공공배달앱 이게 왜 안 되냐면 먼저 첫째는 이게 시 단위는 좀 그래도 가능한데, 군 단위 공공배달앱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 들어가 봤습니다.

○**문금주 위원** 우리 보성군 같은 경우는 입점 업체가 공공배달앱은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민간배달앱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농촌은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고령화돼 있어서 시골에서는, 농촌에서는 IT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사용하기도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또 농림부 상황 보니까 농림부 공공배달 포털 개시 기념 할인쿠폰 지급 여기 5만 명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인데 2주 지났는데 1만 8000건 응모밖에 안 돼 있어요. 이걸로 상황을 보면 이것 사업 예산 세워 봐야 30만 명 채우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근본적인 것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지갑에 돈이 없어서 소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세 번 하면 한 번 할인쿠폰을 주겠다? 세 번 살 돈이 없어요. 직접 지원을 해 주라고 민생회복지원금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들어 주시던데 저는 차라리 이 돈을 자영업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 우선순위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오히려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이것을 무기질비료 예산이랄지 농사용 전기 보조금 사용하는 데 그쪽으로 돌리는 게 더 낫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삭감을 하지 말고 추가로 해 주십시오.

○**문금주 위원** 그리고 알박기 인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송미령 농림부장관님께서 인사 절차 중단을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장관님은 정당성이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정권 교체도 아니고 내란죄로 대통령이 파면당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그 책임을 지고 진즉에 사퇴를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정상적인 인사 절차를 해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그거는 언어도단이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절차 중단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저는 하여튼 그것은……

○**문금주 위원** 그리고 차관님,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장관님은 임명하고 가 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것은 다음 정부한테,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정부한테 업무 방해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인사 절차 중단하세요. 이것은 후배 공직자들한테도 부담을 주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는 하여튼 지금 법에……

○**문금주 위원** 그동안 아마 관료 생활을 25년 이상 하셨을 텐데 보통 정권 교체기에 인사 안 하잖아요. 중단시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정당성도 없는 정부가, 장관이 인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요?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는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문금주 위원** 이 정부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킨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다만 이게 이제 임명을……

○**문금주 위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내란, 비상계엄까지 선언한 정부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권한대행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금주 위원** 장관님, 당장 인사 중단시키십시오. 다음 정부한테 부담 주지 마시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공공배달앱 관련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금주 위원** 그것은 예산 다른 사업으로 바꾸시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외식산업 진흥법도 저희 부 소관 법률입니다. 그래서 외식산업 진흥법……

○**문금주 위원** 장관님한테……

1분만 더 주세요.

장관님한테는 농업·농촌이 있는가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

○**문금주 위원** 공공배달앱을 사용을 해도 농민들, 어민들은 사용을 못 한다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 그 피해가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온다라는 말씀 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어민들한테 차라리 직접 지원을 해 주시라고요. 지갑에 돈이 없어서 못 쓴다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이 외식산업 진흥법도 농식품부 소관의 법률이고 이 법률을 가지고 지금은……

○**문금주 위원** 그러려면 차라리 소상공인·자영업자한테 직접 지원을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그런데 이게 유통업의 어떤 구조 전환도 좀 필요한 게 민간배달앱……

○**문금주 위원** 장관님은 입으로는 항상 시장경제를 얘기하시던데, 시장원리를 얘기를 하시던데 왜 공공배달앱을 지원을 해서 민간배달앱에 피해를 가게끔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민간배달앱 3사가 말하자면 과점하고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수수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서……

○**문금주 위원** 소비자들은 그 수수료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귀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위원님, 그래서……

○**문금주 위원** 지갑이 얇아져서 못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러니까 이 예산도 필요하고 또 우리 농어민들을 위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문금주 위원** 여러분들 기재부 못 이겨서 증액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돌리자 이 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소위에서 뜨겁게 논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장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정부의 예산편성 결과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농림부나 해수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마는 재정 당국의 설득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점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또 서면질의를 통해서, 내일 예결위 소위에서 잘 심사숙고해서 다뤄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부족을 질타했는데 작년 우리 농해수위에서 농업 예산, 어업 예산, 임업 예산을 얼마나 증액을 시켰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때 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해서, 삭감안 처리시키는 바람에 아무것도 통과 못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도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농림부 지금 추경안 이렇게 잘못 편성했다고 질타도 할 수 있지만 그때 여야가 뭐 했냐 이거지요. 그때 어려운 상황, 그때는 어려웠고 올해는 안 어렵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데 그것을 삭감안대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그 유감 표명은 우리도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 특히 예산 삭감 처리를 강행했던 쪽에서는 더더욱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채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민들, 우리 어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오늘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중국 서해 구조물, 잠정조치 수역에. 우리가 순시를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그 배가 온누리호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온누리호가 지금 선령이 33년이 돼서 부식, 침수도 심각하다고 하고 그래서 좀 교체가 필요한 것 아니냐. 좀 더 과학적 장비를 이용해서 중국이 무단으로 잠정조치수역에서 이렇게 구조물 설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유감도 표시해야 되고 하지만 또 제때에 포착을 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한참 뒤에 발견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예산을 저는 반영해야 된다, 순시선 대체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저런 무리한 행태를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추경안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바이고.

두 번째로는 비례 대응하자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 비례 대응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한 적 있습니까,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타당성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부처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아직 한 건 아니고 검토를 하는 단계이신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한 건 아닙니다.

○정희용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가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추경예산에 저는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림청장님, 추경예산 중에 산불 2차 피해 예방 해서 위험목 제거 및 산사태 예방 사업에서 기존 본예산에 1000억이었는데 1740억 원 증액한 거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정희용 위원 이 금액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산림 피해지 보고는 3년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들어간 거는 올해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거 예산편성해서 지금 현재는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올해 큰 산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충분히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부족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필요하다면 내일 예산소위에서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피해지 복구 관련된 거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잘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더 필요한 게 산림 내 연료 제거 사업 같은 것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아시다시피 연료들이 너무 빡빡해서 그것도 같이 동시에……

○정희용 위원 산림 내 연료 제거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별도로……

○정희용 위원 나중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앱 말씀들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어려울수록 이런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리고 재난이 있는 지역일지라도 우리가 재난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지만 재난 있다고 그 지역에 어려운 분들 계신데 우리가 관광도 가면 안 된다, 놀러 가면 안 된다 해서 피해 버리면 그 지역이 더 활성화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더 찾아가야 되고 더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관련해서도 말씀들을 주시는데 딱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마사회, 농어촌 공사, 그때 선거 바로 앞에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해 가지고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하는 거지 이걸 이렇게 인사를 중단하라, 이게 업무 방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사회장 같은 경우를 보면 업무 방해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정 위원님, 혹시 시간 좀 주시면 지금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그것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어기구** 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동 구조물의 철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동시에 범정부 차원에서 비례 대응을 위한 가장 적절한 시설 설치를 위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협의 후에 비례 대응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리가 영향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두 분 장관님, PPT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은 다르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인사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 헌법주석서를 보십시오. ‘대통령 직무 범위는 대통령 권한 전반, 임시적 성질을 고려해 현상 유지에 국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헌법학자회의 보십시오. ‘새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헌법학교수회 성명 발표를 보시면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학 성낙인을 보시면 ‘최대한 자제’로 되어 있고요. 헌법학 김철수 보면 ‘대대적 인사변동과 같이 현상 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학자 최용기 씨는 ‘인사이동과 같은 현상 유지를 벗어난 직무대행은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헌법학자 심경수 씨도 ‘인사이동과 같이 현상 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대행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장영수 헌법학자는 ‘위기관리를 위한 최소한에 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이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 거고요,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데 차기 정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여러분들을 조사, 감사, 수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과 월권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법과 원칙을 존중한다면, 우리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면 중단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파면되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파면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인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마사회장 또 농어촌공사 사장은 절차가 중단돼야 됩니다. 이것을 임명 제청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그 실무를 지원했던 운영지원과장, 그 운영지원과 위에가 어디입니까? 기조실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차관 직속입니다.

○**이원택 위원** 예, 차관님 등 이것 다 월권과 직권남용 조사 대상입니다. 감사 대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지원과장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자리에 아직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불필요하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차관님 얘기 아까 들었는데 차기 정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와 감사와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중단을 요구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고, 물론 행안부 쪽에 예산이 좀 반영돼 있다 이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나 이런 얘기를, 무기질비료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국민의힘이 약세 지역 아닙니까? 50년 동안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형님이 계신데 농민입니다. 무기질비료 예산편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분 입에서 국민의힘을 아주 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편성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편성 안 하면 우리 민주당한테는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농민한테는 손해지요.

이건 정부의 능력입니다. 기재부에 대한 평계가 될 수도 있고 기재부가 고집을 부릴 수도 있지만 정부의 능력에 해당됩니다. 낙농도 마찬가지지요. 그거 좀 지원해 주면 될 걸 그런 게 다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기정예산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그 기정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경북 지역 쪽의 피해를 본 농민들을 위해서 기정예산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다른 농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농민들의 기회비용과 그 손해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걸 국회 단계에서 해 달라, 뭐 해야겠지요. 그러나 저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현 정부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런 점에서 생각을 깊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게 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산림청장님, 헬기 6대인데 이거 야간 주행 가능한 헬기입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중형헬기가 만약에 수리온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능하고요, 다른 기종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원택 위원** 아니,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산림청장 임상섭** 아니, 이게 공개경쟁입찰이라 저희들이……

○**이원택 위원** 아니, 조건을 붙여야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조건을 붙이는데 야간에 들어올 수, 야간에 주행할 수 있는 현재 기종은 수리온 말고는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볼 때 골든타임제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 매뉴얼이 4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2단계로 줄이세요. 초기에 진압을 해야지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간 다음에 국가 자원 동원해 봤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30분이든 40분이든 원점 타격할 수 있도록 헬기 자원을 구축해야 됩니다. 저녁에 뜰 수 있는 자원이 돼야지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야간에 뜰 수 있는 헬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안 통합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야간에는 특수장비를 부착한 헬기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야간에 강풍이 불면 현재는 항공기밖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관련된 건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국방부하고도 이번에 다시 또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야간에 강풍에서도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진화 자원 동원 단계도 4단계로 되어 있는 거 재난관리법하고 맞춰 가지고 다른 더 최적의 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산림청이 산불의 실력을 보여 줘야 됩니다. 실력을 보여 주고, 제대로 진압하고 난 다음에 산림청이 산불의 어떤 지휘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라는 것을 보여 줘야지 결과적으로 강풍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초대형 산불은 나는데……

그러나 산림청이 이걸 지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많은 공분을…….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정확히 해 줘야지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불 진화와 관련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속도감 있게 안 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 제일 잘 끌 수 있는 산불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장관님, 오늘 제가 우리 상임위를 대표해서 오전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기자회견문을 잘 한번 보시고요.

새로운 대통령 누가 되든지 간에 한 40일 후면 나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대통령이 인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 인사는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한 달 후면 나와요. 그런데 뭘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차관님, 제 말이 틀렸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이원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 그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헌법의 그런 의미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판단은 권한대행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이 하셔야 돼요, 장관님이. 장관님이 하시고……

○**이원택 위원** 장관님도 그렇고 실무자도 다 다친다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뭐 그거야……

○**이원택 위원**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공무원들 다 다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책임질 있으면 저도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택 위원** 아니, 본인만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 어기구**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한 달 후면 누가 되든지 간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텐데……

○**이원택 위원** 본인만 책임지면 상관이 없어요. 애꿎은 다른 직원들이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다른 직원들 안 다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하여튼……

○**이원택 위원** 이건 직권남용이라니까요?

○**주철현 위원** 아니, 권한대행은 장관 평계 대고 있잖아요. 신청하면 한다 이런 취지인데 그런 말씀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어기구** 이게 장관님이 제청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 정도만. 그렇게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추경 때문에 말이 많으신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늘 장관님 제안설명서 이거 누가 썼습니까? 이거 보면 첫 번째 페이지 하단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2개 사업에서 1150억 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말이 맞는 얘기예요?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농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장관, 차관님은 충분히 얘기 들었으니까 박수진 기조실장님 어때요? 이 워딩이 정말 농림식품부가 할 추경 관련한 워딩입니까?

저는 이 단락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고 2개 사업에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말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우리 농민들 복장을 터지게 농림식품부에서 만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 재원 어디서 마련했습니까, 장관님?

이번 추경예산 재원을 어디서 마련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재원?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원장 어기구** 농특회계에서 나와요, 농특회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농특회계로 이관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농특회계는 본래 목적이 농업·농촌 발전, 농업을 지원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상공인 지원하라고 만든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농어민들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정말 지금 현장에 가면 귀가 따갑도록 듣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사용 전기료 차액 지원이라든지 사료 구매자금 상환유예 이런 사업들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안 하실 겁니다.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계신 농림식품부 간부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렸어요? 어떻게 추경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고…… 이것 이 단락 쓴 사람 징계받아야 됩니다, 징계.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나 기재부장관이 할 얘기예요. 이런 점에서 참 우리 농림식품부, 정말 실망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요.

일단 주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한 4시 2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어기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질의 순서가……

주칠현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주칠현 위원** 예,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2차 질의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5분으로 하겠습니다, 5분.

주칠현 위원님, 5분 안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칠현 위원** 산림청장께 산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불의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서는 헬기와 임도 필요성 이야기했고요. 임도와 관련돼서는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던데 임도 밀도에 대한 객관적 기준에 지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도 많고 또 공격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정부에서도 두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임도의 통일적 기준을 세우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임도의 필요성이라든지 예산 증액 필요성은 농해수위에서 아무도 부인하는 분이 없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산림청에서 자료를 재정비하고 다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주칠현 위원** 산불진화헬기와 관련돼서 이번에 많이 했던데, 결국은 이번에 늘어난 것이 대형헬기 1대에서 2대 늘려서 3대로 또 중형헬기가 2대입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추경에서 3대고요. 기정예산은 1대 있고 추경에서 3대입니다.

○주철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대형 3대, 중형 3대 구입하면 이것을 도입하는데 3년 이상 걸리잖아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3년 걸립니다.

○주철현 위원 그사이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산림청장 임상섭 임차 헬기도 검토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주철현 위원 아니, 당장. 당장 아직까지도 산불 주의기간이 안 지났고, 5월 달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올겨울에, 11월·12월……

○산림청장 임상섭 가을에……

○주철현 위원 올가을, 겨울 하게 되면 여전히 산불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헬기 임차 예산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산림청장 임상섭 그래서 임차 헬기 예산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임차 헬기 예산을 추경에 해도 내년 봄에 주력으로 써야 되는 거고 올가을에는 사실 크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철현 위원 올가을에 산불 안 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나면 책임지실래요?

○산림청장 임상섭 현재 자원 가지고 충분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을 산불은 크지 않기 때문에……

○주철현 위원 내년에 카모프 헬기 14대가 가동 중단된다 그러더라고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래서 담수량, 헬기들의 용수 운반 능력이 한 4만 2000ℓ 담수량이 감소가 돼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렇게 되면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객관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그래서 4만 2000ℓ가 내년 봄철 기준으로 모자라고요. 그런데 기도 입된 것 1만 4000ℓ 하면 실질적으로 모자란 게 2만 8000ℓ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1만ℓ짜리 대형 임차 헬기 3대 정도를 내년 봄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올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안 돼서 문제가 되는데 올가을부터라도 준비를 미리 했어야지요.

하여튼 이번 추경 때 이 부분과 관련돼서 헬기 임차비용 증액하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주철현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야간 진화헬기 아닙니까. 결국 우리에게 일부 야간 진화장비를 갖춘 헬기가 구비돼 있고 일부 직원 중에 가능한 분이 있다고 하시지만 지금 거의 야간 진화를 않고 계시잖아요. 사실상 못 하는 거지요, 겁나서. 못 하는 건데 이와 관련돼서 민간 헬기를 임차하고, 민간에 준비된 기관이 있잖아요. 헬기도 있고 있는데 안 되면 이런 부분이라도 임차해서 준비를 갖춰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현재 빠졌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그것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청장 임상섭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데 지금 찾아 가지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 부분도 본 추경에서 증액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검토해서 필요한 금액만큼 산정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주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는 5분 내에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간사님들 합의사항을 어기고 5분을 준 겁니다. 5분 내에.....

다음, 전종덕 위원님 5분 동안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전종덕 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하시고 질타도 하셔서 저는 짧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마는, 제가 2월 대정부질의에서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추경은 민생 추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미뤄지고 있으면서 농민들은 무기질비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지지도 않고, 그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 우리 농해수위에서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워지지도 않고 삭감돼 버린 거지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그렇게 추경에 하기를 기다렸는데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너무 실망스럽고 분노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처럼 저는 장관님의 답변 태도도 상당히 많이 아쉽고 좀 유감입니다. 장관님이 답변하실 때 반만이라도 우리 농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농림부장관이냐, 기재부장관이냐 이런 말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을 지적드리고 싶고.

지금 무기질 예산이라든지 전기요금이나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면세유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예산을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도 상임위한테 도와주십시오라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산림청장님, 제가 방금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특수직무수당을 공무원들에게 8만 원 지급하고 있지요. 근거는 지금 규정에 근거해서 하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전종덕 위원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금 규정 제2조 1항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의 적용대상은 산림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산불·산사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해서 이 수당을 지급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진화대원들이 산불·산사태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안 합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일반직공무원들하고 산림청 특수진화대원들하고의 업무가 똑같아요. 그렇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전종덕 위원 그런데 수당은 차별이 있어요. 제가 그 지적을 아까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3조(지급대상의 범위)를 보면 지급대상의 범위의 2항은 산림청장님의 이런 산불이나 산사태 업무를 상시 업무로 하고 있는,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수직무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안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럼 청장님께서 정말 산불진화대원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그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전종덕 위원 시간…… 제가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이 수당을 지급하는 지급 근거 규정에 의해서도 그리고 업무를 똑같이 하고 있는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당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추경 편성할 때 똑같이 8만 원으로 편성해야지 왜 4만 원만 편성했느냐, 맞지 않다.

그래서 추가로 4만 원 편성해서 8만 원으로 맞춰 줘야 한다 이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계속 다르다고 주장하셨어요, 아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전종덕 위원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특수근무수당에는 위험수당도 있고 특수업무수당도 있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전종덕 위원 그런데 그것을 통합해서 산림청은 이 규정에 근거해서, 산림청 특수직무 규정에 근거해서 특수직무수당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전종덕 위원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규정에 의거해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청장님의 재량으로 이 규정에 의거해서 얼마든지 진화대원들한테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 예산에서도 차별해서 두었다. 저는 이것을 바로 잡아서 이번 추경에 차별 두지 말고 똑같이 8만 원으로 배정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산림진화대원들이 필수업무 종사자로 규정이 됐지 않습니까, 22년도에?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전종덕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되면서 이 필수업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러면서 임금이든 처우든, 여기 처우에 있어서도 초과근무수

당이나 출장수당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고 이것은 산림청이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해서 수당이나 등등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전종덕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비가 편성이 전혀 안 됐어요, 출장을 155건 정도 가는데.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탄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장을 가지고 수당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예산에 반영해서, 정규직 직원도 아니고 임금도 낮게 받고 처우도 불안하고 이렇게 이런 진화대원들은 그런데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산림청장님의 이분들을 지원하고 배려하는 이런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수당 8만 원과 관련된 것하고 출장비 관련된 것은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100%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여비, 출장비도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제가 산림청장 직권으로 해서 다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에 편성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와 달라는 말씀 드린 거고.

특별업무수당도 기본적으로는 이 기준이 공무원들한테 적용하도록 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청장이 판단해서 준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이 하자고, 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데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부처들하고의……

○전종덕 위원 아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지요. 뭐예요, 나는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안 돼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산림청장 임상섭 제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산림청장님의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하겠다고 답을 하셔야지 왜 평계만 대세요.

○위원장 어기구 다음,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김선교 위원입니다.

청장님,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때 원활한 시스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순간 1000만 명 이상이 산불시스템에 접속을 해 가지고 약간 지연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접속자 수는 계속 그래도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김선교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번 추경에서 앞으로 계속 대형화되는 산불 상황을 국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대한 확대·증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선교 위원 좀 예산에 구체적으로 셨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저희가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런 체계 정비를 좀 하실 것 같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 소위에서 다뤄질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예.

○김선교 위원 그러면 미처 예산을 담지 못했으면 그것을 증액 예산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김선교 위원 농기계의 경우 산불 저것 했을 때 그 기종이 이렇게 아주 구분이 돼 있나요, 시스템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지금 저희가 11종……

○김선교 위원 글쎄, 트랙터·콤바인 이런 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농기계 가격 목록집에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한 100종이 넘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확장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요.

○김선교 위원 글쎄요, 그것 좀 문제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해 가지고 농가들이…… 제가 현장 가 보면 농기계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지자체 같은 데 임대은행을 최대한 활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기종을 11종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확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선교 위원 그게 엄청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산불 피해지역에 얼마 정도 피해가 났는지는 좀 산정된, 나온 가격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기계 같은 경우에 1만 7158

대가 손실을 입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일단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413대 무상 임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시군별로 있는데요. 여기에 잔여 예산 활용해서 2억 원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농작업 대행반 운영도 하고 있고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산불 피해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농기계를 새로 사고 싶은데 복구비 단가가, 복구비의 지원율이 35%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상향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업체들이 좀 도와주셔서 업체 할인을 추가적으로 붙여 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필요하면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추가경정에 어차피 여러 가지, 무기질비료도 그렇고 전기요금도 그렇고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담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그때 소위에는 차관님이 오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김선교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드디어 임미애 위원님입니다.

○**임미애 위원**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임미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농림부가 어떻게 일을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은 농림부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여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추경예산을 두고서 여러 차례, 아까도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결뱅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농민들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런 겁니다. ‘산불로 생산 기반을 잃었다. 이들이 공동체가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농림부의 입장은 이들의 생산 기반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분들이 올봄에, 4월 달에 눈이 내리고 날씨가 무지 추웠습니다. 배꽃이 피었을 시기에 모두 다 꽃이 얼었습니다. 상주의 경우는 500㏊가 넘는 면적의 배밭이 모두 다 아작났습니다. 그러면 아마 올해 이분들은 수확할 수 있는 배가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이런 상황에서 이 농민들이 어떻게 올 1년을 베틸까, 내년에 다시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고민해 줘야 되는데 과일값이 무지 오르겠구나 그러면 할인쿠폰을 지원해야 되겠구나, 소비자물가가 오르겠구나라는 식으로 접근하

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되고 그래서 농림부의 태도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저한테 지원계획안 보내 주셨는데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 피해 농업인 대상 농기계 할인 판매, 지난번 울진 산불 기준으로 하면 35%입니다. 그리고 55%는 농가가 대출을 하고요. 10%가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지금 농민들이 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향할 계획이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청장님, 이번에 산불 겪으면서 산림청도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림청의 기능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고요. 산림청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과연 산림청이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있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도뿐만이 아니라 숲가꾸기 사업, 벌채 사업 이런 것들 다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미애 위원** 저는 그 논란 속에서 이런 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불 다 끝난 다음에 특수진화대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산불 재난현장에서 있는 일들을 기자회견을 하고 기사가 계속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산불방지대책으로 해서 진화장비 확충 이번에 20억 원 추가하겠다고 올리셨는데요. ‘웨어러블 작업복, 얼마 전에 웨어러블 작업복을 받았는데 시제품 착용 테스트했는데 무겁고 효과성도 떨어진다. 여덟 벌 지급받았는데 모두 창고에 넣어 두고 아무도 안 입고 있다. 방염텐트, 기존에 텐트 한 번도 써 본 적 없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새로 지급받았다. 그 장비 요청한 적도 없고 기준 것도 충분하다. 고글, 진화할 때 시야 확보가 가장 우선인데 이 고글은 산불 전용 고글이 있다고 해서 받았는데 그 고글이 스키 고글처럼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밤에는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된다. 야간 진화할 때 눈이 맵고 잔가지에 찔리는 일이 많다. 제대로 된 투명 고글 받았으면 좋겠다. 산불진화복, 한 벌에 40만 원이고 바지는 7만 원인데 시장에 파는 1만 원짜리와 비슷하다.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제공돼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 가시면요 제대로 집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런 이야기들, 진화대원들의 하소연들이 이렇게 언론을 도배하게 되면 기관의 신뢰도는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주의해 주시고요. 예산 받아 가시면 제대로 집행해 주십사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피해 면적과 관련해서요, 울진 산불의 경우 1㏊에 500여만 원의 복구비용 책정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아니네요. 울진 산불은 800여만 원인데 이번에는 피해 금액을 500여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벌채 면적이 제가 올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22년도에는 824㏊ 벌채에 500억 가량 소요가 됐거든요. 지금 수십 배에 달하는 이 벌채 면적이 확인되었을 텐데 지금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울진 산불 때는 긴급하게 벌채해야 되는 면적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때 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벌채한, 긴급하지 않게 하는데 과다하게 벌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경북 지역에서는 10만ha 기준으로 했을 때 긴급하게 벌채해야 되는 면적들을 줄이는 차원에서 줄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미애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 벌채가요, 벌채하기 위해서 이것 예산 통과가 되면 지역에 어떤 형태로 내려가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보조금 형태로 내려갑니다.

○임미애 위원 보조금 형태로 내려가나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지자체.

○임미애 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산사태 대비해서 위험지구 선별해서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의 위험목은 우선적으로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산림청장 임상섭 예, 우선적으로 지원……

○임미애 위원 지금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하여튼 우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과수농가 피해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복구를 하는데 저희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개정해서 생산시설이랑 재해예방시설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온실 신·개축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묘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목 생산 지원 이것은, 저희 기정 사업 중에 FTA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을 활용해서 하려고 지금, 그런데 이것은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임호선 위원 그것 정리해서 한번 보내 주실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경북 지역의 8.1% 1560ha, 소실만 575ha.

사과는 지금 수입 금지 품목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금사과 우려에 대한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과수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른 과일도 마

찬가지입니다만 식재 후에 5년이 돼야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오 년 정도,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사오 년, 짧게는 4년, 5년.

그러면 이분들 지금 사실은 식재가 돼야만 제대로 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내년 예산에 담을 예정인 것 같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담아야지 이게 요즘은 3월 달, 가을에 묘목을 심거나 아니면 이른 봄에 심거나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이른 봄에.

○**임호선 위원** 이른 봄, 3월 내외로 이렇게 심어야 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삼사 월.

○**임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내년 예산으로 하면 1년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서 과수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경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지 하는 걸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긴급생계비 지원을 보니까 이게 한 달 치가 지원이 된 모양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기준에는……

○**임호선 위원** 아니,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지금 이것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임호선 위원** 협의 중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2인 가족 기준 117만 8000원 한 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원래 보통의 생계비가 그런데요. 생계비 기준이 원래 그런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임호선 위원** 어떻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말하자면 과수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배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관계부처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분들은 사실 삼사 년의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리고 23년도 호우 피해 시에 생계비 지원 기간 연장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했습니다. 6개월까지 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장관님이 특단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임호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장 이번 추경하고는 조금 관련성이 떨어집니다만 지금 일본이 쌀 대란 난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걸 보시면서 장관님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런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호선 위원** 강 건너 불구경은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 당연히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호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정말 남의 일이 아니겠구나. 우리 농정이 일본 벼 재배면적 감축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본 쪽 정책을 약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벼농사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많은 것 같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본도 구조조정을 많이 해 왔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유사해요, 우리 쌀 시장하고 여전이. 그런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에 닥치면 이게 심각한, 진짜 식량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같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그런데 다만 말씀 하나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도 매년 20만t 정도를 매입을 합니다. 공공비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공공비축미를 방출하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재해재난,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흉년이 왔을 때 이런 때만 방출하는 걸로 돼 있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소비량이 늘었을 때 방출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또 벼 재배면적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일본의 쌀 대란 난 사안을 가지고 정책의 시사점이 뭐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훈으로 삼을 게 뭔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차관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1차 질의에 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강조드립니다.

장관님, 그 말씀 방역국장한테 듣기는 들었는데 거듭 어려운 지자체의 실정을 감안해서 기왕 지급하시려고 마음먹었으면 더 많이 더 빨리 지급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축구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다음에 여야 위원님들, 제가 다시 제안드리는데 물론 농림부·해수부 예산도 중요하지만 산림청 소관의 임도 개설사업, 헬기 임차사업 등은 상임위 차원에서도 증액을 해서 예결위로 본회의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들이 반드시 이번 추경에서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거듭 드립니다.

청장님!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삼석 위원** 오늘 보도를 보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발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임도가

산사태의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시고.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삼석 위원 본인의 전문성이 없는 짧은 식견인지 몰라도 임도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길이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계 과정에서, 시공 과정에서 전문적인 것, 기술적인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막연하게 주로 사용되지 않는, 일반 도로 같지 않은 그런 임도라고 생각해서…… 물론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한 번씩 가서 보면 ‘이게 진짜 정부 돈 갖다 낸 길이 맞나?’ 하는 그런 걸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의 능선이라면 임도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우측을 좀 옮겨서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비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로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을 좀 더 키우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직접 내려가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설계 과정, 시공 과정 이런 것을 좀 더 이렇게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장님 얼굴도 안 보이는는데……

○산림청장 임상섭 아닙니다. 메모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서삼석 위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뭘 메모해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냥 의례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설계·시공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설계 방법, 시공하는 방법도 좀 전문성 있게 환경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육안으로 보더라도 산사태 주범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한번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째, 일리가 있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삼석 위원 일리가 있느냐고요, 내 말이.

○산림청장 임상섭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삼석 위원 해 보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지금 우리나라 임도 밀도는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꼴찌 수준인데 어려운 게 어떤 것들이냐 하면……

○서삼석 위원 자신의 일을 부끄러움 없이 꼴찌라고 하면 되겠어요?

○산림청장 임상섭 저희도 임도를 놓을 때 10년 기본계획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계획은 세웁니다. 세우는데, 사유림이 60%가 넘다 보니까 산주 동의 문제라든지, 산주 동의가 제일 어려워서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산주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결정적으로 제일 튼튼한 임도 짓는 데 어려운 점이 1km 하는 데 3억 5000 정도밖에 예산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최소의 예산으로 많이 임도를 내는, 지금 그런 식의 임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에 조금 취약하다고 지적하시는게 그런 것들도, 아마 다른 농로나 국도나 지방도나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보시면 임도의 시설 단비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저희들이 수차에 말씀드리고 임도 단비도 올려야 된다고 수차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서삼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설계·시공을 하지 말고 100m짜리를 10년이 걸

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서삼석 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산림청장님, 올봄의 우리 영남 지역 산불 피해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남의 산불 피해액이 1조 157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송옥주 위원 그 가운데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5개 시군의 산불 피해액이 사유시설은 5090억 원, 공공시설은 6216억 원, 총 1조 1306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산청과 하동 2개 군의 피해액은 271억 8423만 원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이 중에 사유시설이라는 게 사유림을 주로 얘기하는 건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사유림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송옥주 위원 저희가 보니까 여러 업무보고나 추경 관련된 걸 받았는데 산불 피해 농업인 지원계획안에는 있는데……

장관님, 농업인은 임업인이나 임업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업 관련된 것은.

○송옥주 위원 그러면 임업인과 임업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산림청장 임상섭 산림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돼 있고요. 국유림·사유림을 포함해서 다 공공시설로 되어 있고 임업인들이 하시는 시설 피해, 임산물 피해 같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사유시설로 돼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지원이나 그런 부분은 있나요? 저희가 임업단체분들하고 여러 말씀을 나눴는데 농림부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농업, 해양수산 관련된 것 중심으로 되어 있고 임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간과되고 본인들이 보호를 못 받고 지원이 별로 없다라는 불만과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유시설이 이 액수 중에 거의 한 45% 정도 차지하게 피해를 본 부분들이 있는데 임업과 임업인에 대한 대책은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중에 영남의 피해가 많은데 여기에 송이버섯 채취를 하거나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산이 다 타 버려서 올해는 송이버섯을 거의 먹을 수가 없을 거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송이버섯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생계에 막막한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다른 업종이나 관계되는 분들도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이것과 관련돼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실래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리고 청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농해수위 전체회의 때 특수진화대의 안전장비 관련돼서 헬멧이나 진화복 구매 방식을 놓고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청장님께서 제3자 구매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맞습니다.

○**송옥주 위원** 후속 조치를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 구매 담당 부서한테 계속 물어봤더니 이게 공문도 안 내려오고 별다른 시달이 없어서 추진할 수가 없다, 규정에도 없다라고 계속 그리고 있는데 청장님은 상임위원회에서만 답변하시고 왜 관계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내리거나 후속 조치를 안 하셨어요? 이것 빨리해 주셔야지. 이게 봄철의 산불 진화 기간이 아직 다 종료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언제, 가을이라고 산불이 악화된다라는 것은 예측이신 거지 지금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책임하고요.

진화대분들이 안전하게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오늘 당장 이 부분 지시를 내려서, 저가 중심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안전하고 좋은 품질로 물품을 구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그것은 실제 구매하는 지방청에서는 현재 그 공문이나 조치를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3자 단가계약은,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를 저희가 검토했는데 이게 조달청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실구매하는 기관에서 그게 협조가……

○**송옥주 위원** 어쨌든 청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고 시그널을 주세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런 식으로다가, 가능하게끔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진화대분들이 사망하지 않고 사고 나지 않게 해 주시는 게 책임이세요. 그러시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조달청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게 결과가 아직 안 나서 그렇고……

○**송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농림부장관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무기질비료 예산 372억 원이지요, 현재? 추산 금액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천호 위원** 이것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천호 위원** 상임위 위원님들도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정부 측에서도 다시 정말 이 부분은요…… 제가 오늘, 농가주부모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잘 압니다.

○**서천호 위원** 오전에 면담을 했고 또 지역농협 조합장들 여러 분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한 가지만 건의하라니까 이 얘기를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얼마나 절실한지 또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항목이 어떤 건지를 아마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02만 우리 농민들이 다 요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리고 산불 피해 보상 재난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점은 일반적인 공감대인데 실제로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규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지금 보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다음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보면 국가, 지자체 책임과 책무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재난지원금 5000만 원 한도 기준이 95년도에—25년 전입니다—결정된 이후에 그 기준을 지금까지도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정말 각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야 될 사안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농림식품부에서 좀 나서서 규정 개정 작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규정이 살아 있기 때문에 대파대 지원율이라든지 비닐하우스, 농막, 농기계 지원금 자체가 50%, 35%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걸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준 부분이.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보조율 상향하는 문제 또 단가 현실화하는 문제 이 부분은 농림식품부에서 나서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 다만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복구비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한도가 없어서 5000만 원 이런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지원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랑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자연재난은 5000만 원 한도인데요. 사회재난이라 다행히 없습니다.

○**서천호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보조율 상향, 단가 현실화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단가 현실화,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좀 기울여 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산림청장님, 산불 대응 체계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되는데 지금 현재 산불방지센터가 전국에 두 군데 설치돼 있지요? 강원하고 경북.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천호 위원** 그런데 남부권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남부권이라 하면 경남, 전남, 전북, 조금 넓게 하면 부산, 울산까지. 그쪽에 산림의 분포 면적을 따지면 꽤 넓습니다. 그렇지요? 지리산도 포함돼 있고.

○**산림청장 임상섭** 예.

○**서천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이번 추경은 보면 민생안정과 물가 대응의 취지가 있잖아요, 두 분 장관님.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주로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추경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세 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민생안정 부분에 4조 3000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통상하고 AI 대응에 4조 4000억……

○**문금주 위원** 아니아니, 지금 농림부, 해수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 우리……

○**문금주 위원** 주로 보면 소비 촉진을 하는 데 지원하는 할인쿠폰이랄지 이런 내용이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아까 주질의 때 좀 화가 났어요, 솔직히.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다른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취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고 물론 같이 노력을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기재부 상대하기가 벼거워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생산비를 줄이려는 노력도 추경에 담아 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였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기질비료, 전기요금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면세유.

○**문금주 위원** 면세유, 사료 이런 부분들 좀 생산비를 낮추는 데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향후에도 그런 쪽에 여러분이 노력을 더 많이 보여 주셔야지…… 지난 연말에 올해 예산 할 때도 저희들이 농해수위에서는 나름 조정이 다 됐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정희용 간사께서 약간 오해가 있을 법한 얘기를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민주당이 나서서 삭감해 버린 건 아니잖아요. 정부한테 충분히 기회를 줬고 증액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가져오도록 시간도 주고 나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져 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 우리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뭐니까? 삭감. 증액은 정부 동의 있어야 되는데 삭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된 것 아니에요? 정부의 노력이 저는 부족했다고 보는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기재부 상대가 벼거우면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럼요.

○**문금주 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같이 싸워 주고 노력을 하는 건데 장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냥 방어하는 논리만 세우는 거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위원님.

○**문금주 위원** 저희들이 장관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보다도 더 농민, 농업 또 해수부는 어민, 농어촌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같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생산비 상승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는 또 기후변화, 기후위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 지원하는 것, 자금 대출받고 하는 것들 연장하거나 기한, 상환유예 이런 부분도 해수부나 농림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어찌 됐든 내란사태 이후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니, 농어민들 더 힘들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들 비록 추경에 담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책 지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부분도 관계부처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잘 살피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대출 자금 상환유예를 해 준달지 기한 연장을 해 준달지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상환 기한 연장하고 이자율 감면 등등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정희용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농기계가 수요는 많이 필요한데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번 예산 증액안 다를 때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산불로 인해서 과수 생산 피해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몇 년 동안 묘목을 키우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여기에 대한 현대화 시설 지원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예산안 처리의 전철을 다시 밟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아마 예산소위에서 제기되는 증액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으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우리 농업, 어업에, 수산업에 또 산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라고.

돌이켜 보면 작년에 예산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그리고 연이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연이은 특검법 발의 또 거기에 따른 재의요구권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게 된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고 이런 시점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진짜 진정으로 농업계와 수산업계 또 산림업계를 걱정하고 국민들을 걱정하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집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로 논점을 흐리는 이야기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관님들께서는 준비를 각별히 잘해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장관님 두 분하고 산림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 시간 써서,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산불 피해 입은 우리 농업인들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기정예산을 활용한다거나 또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거나 그리고 관계부처에 확보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진행을 하여튼 최대한 저희로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들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 농업인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좀 더 힘을 내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해수부장관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었는데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무거워졌습니다. 책임감도 더 느끼고요. 우선은 조금 말씀 못 드린 부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북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수산 분야에서도 피해가 있었는데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타 버린 어망, 어구에 대한 수산장비 피해 규모가 지금 94억 정도가 되는데요. 재해복구비하고 수산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응자사업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재가 난 어선의 대체 건조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해수부 내 가용자원 활용해 가지고요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가공시설이 또 거기 있었습니다. 설비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사실은 3유형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아주 유동성 있게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지 선정을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원이 필요하고요. 올해 차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해양수산부장관님께 꼭 질의를 해 달라고 해서요.

정부 추경안에서 해양수산부 예산 263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수산업 재해대책 강화,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이 대단히 유감이다. 사실 이번 산불로 어선과 양식장, 수산업 피해 현장에 대해서 공적

재해보험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관련한 내용인데요. 산불 피해를 입은 어선 29척 중 19척 그리고 양식장 6개소 중 4개소가 보험 미가입으로 보상받지 못했고 가입된 양식장 2개소 또한 화재보장 항목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대림 위원**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재해보험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것은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당연합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서 보험료 구조를 고려할 때 어선보험인 경우에, 보험료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래서 보험료 구조를 고려할 때 어선보험인 경우에 부가보험료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되고 양식보험인 경우에 순보험료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업인의 부담 완화가 있어야 가입률이 제고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지적이고요.

그래서 어선보험인 경우는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은 부가보험료의 국비 보조를 기준 75에서 100%로 확대해서 어민 부담을 경감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77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또한 양식보험인 경우에는 순보험료의 국고보조 비율을, 기존은 50%지 않습니까? 이것을 70%까지 상향해서 어민이 실질적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0억 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형산불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수산업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식보험과 어선보험에 대해 총 137억 증액을 검토해 주시고요. 이 보험료 구조와 관련해서 어선보험의 부가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양식보험의 순보험료 국고 지원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심사 전까지 고민해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그 질의해 주셨던 내용들 정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필요할지 그다음에.....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그래야만 수산정책보험이 돈만 나가는 보험이 아닌 진짜 재난 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전문가의 지적이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저희가 준비한 것은 어선원보험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규모는 조금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했던 것을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고 재정 당국 협의 이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우리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청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에 꼭 하고 싶었는데 못 하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하시겠습니까?

○산림청장 임상섭 아까 제가 준비했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지금 이번 산불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산불, 산사태, 산림재난에서 인명피해가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돼서……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임도라든지 숲 가꾸기, 벌채라든지 산불 진화 체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서요.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산림청이 국토녹화도 열심히 해서 성공한 기관이고 하니까 좀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믿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산불 관련된, 앞으로 더 큰 산불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습니다. 지금 4200억 원 정도 편성은 됐지만 지자체 관련된 예산들이 더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더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차관님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금주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농산물의 물가가 됐든 뭐가 됐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생산비를 절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당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니까 자꾸 할인 판매나 이런 쪽을 강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도 생각이 생산비를 절감하는 데…… 그래서 재해예방시설을 만들어 주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데 정부가 지원하는 것,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재정 당국하고도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좋습니다.

해수부차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저희들 재정 당국과 협의한 부분들이 더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이견이 없는 부분만 가자라고 해서 추경이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또 지적해 주신 부분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고요.

저희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고요.

거기 앓아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 농민들, 어민들, 임업인들, 축산인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늘 우리는 그분들 편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에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도 보면 우리 농림 또 농촌, 임업, 축산 이쪽 예산이 항상 후순위야, 후순위. 그런 인식을 강하게 받아요. 항상 소외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거기 계신, 우리 어민들, 농민들, 임업인들, 축산인들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분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셔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재정 당국과 예산 협상에 나서 줘야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추경 예산이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법률안·청원 및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7항 까지 87건의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 및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88항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90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윤준병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4월 24일 오후 5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김상욱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서천호 송옥주 어기구 이병진 이양수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조경태 주철현

○첨가 위원(1인)

윤준병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임재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박범수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농업혁신정책실장 강형석

식량정책실장 김종구

정책기획관 김정주

농촌정책국장 박성우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박정훈

농식품혁신정책관 김정욱

농업정책관 윤원습

식품산업정책관 주원철

방역정책국장 최정록

식량정책관 변상문

축산정책관 안용덕

유통소비정책관 홍인기

기획재정담당관 김재형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차관 송명달

기획조정실장 이시원

해양정책실장 김성범

수산정책실장 홍래형

해운물류국장 허만욱

해사안전국장 최성용

항만국장 남재현

정책기획관 권순옥

해양정책관 김명진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

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수산정책관 서정호

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

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

기획재정담당관 김원배

농촌진흥청

청장 권재한
기획조정관 이상호
농촌지원국장 권철희
산림청
청장 임상섭
기획조정관 이종수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기획재정담당관 이준산
해양경찰청
청장 김용진
차장직무대리 안성식
경비국장 여성수
구조안전국장 박재화

【보고사항】

○의안 회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8.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5)

먹거리기본법안

(2025. 4. 8.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7)

이상 2건 4월 9일 회부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9.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6)

4월 10일 회부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9)

이상 2건 4월 11일 회부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2)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4)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6)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0)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2025. 4. 11.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1)

이상 10건 4월 14일 회부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0)

이상 4건 4월 15일 회부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5.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0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5.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5.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5.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5.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5.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3)

이상 7건 4월 16일 회부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6.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6.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6.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6.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3)

이상 5건 4월 17일 회부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7.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8)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7.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0)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4. 17.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7.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7.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7.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7.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0)

이상 7건 4월 18일 회부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4. 2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986)

4월 2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4. 8.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2)

4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0)

4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9)

4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4. 15.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8)

4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위원회 직접 회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5)

4월 14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21.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4.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0)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7.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14.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1)

먹거리기본법안

(2025. 4. 1.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1)

먹거리기본법안

(2025. 4. 8.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7.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5)

이상 13건 4월 21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